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횡령)·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배임)(피고인 1 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)·증거위조교사·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



관한법률위반(수재등)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5. 13. 2010고합1500,2010고합1598(병합),2010고합1617(병합),2010고합1681(병합),2011고합 40(병합)]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사】 서범준 외 1인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민병훈 외 6인

【주문】

1

피고인 1, 2를 각 징역 5년, 피고인 3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.

다만,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이 법원 2010초기4451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3.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인 3으로부터 몰수한다.

피고인 2로부터 2억 원을 추징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, 2에 대한 2004. 4. 30.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(배임)의 점 및 피고인 1에 대한 2010. 9.경 증거위조교사의 점은 각 무죄.

【이유】

][별지 생략]

[이유]

][별지 생략]

[이유]

][별지 생략]

[이유]

】[별지 생략]

[이유]

][별지 생략]

[이유]

][별지 생략]

[이유]

][별지 생략]

[이유]

][별지 생략]

【이유】

][별지 생략]

[이유]

][별지 생략]

【이유】

][별지 생략]

[이유]

][별지 생략]

[이유]

][별지 생략]